

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
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남완현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4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27호로 2024년 4월 9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침수,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, 「물환경보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4. 13. ~ 2024. 4. 17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,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」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고,
- 안 제3조제1항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2항2호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
-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빗물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민·관 협력,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결과

-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폭우·가뭄 등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,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17개의 자치구에서 빗물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.

| 빗물관리 관련 전국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자치구 | 조례명 |
| 1 | 경기도 |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|
| 2 | 경산시 |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 |
| 3 | 경상북도 |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|
| 4 | 고양시 |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|
| 5 | 광주시 광산구 | 광주광역시 광산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6 | 광주시 남구 |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7 | 나주시 |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8 | 부산시 연제구 |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|
| 9 | 양산시 |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0 | 영양군 | 영양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1 | 의정부시 |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 |
| 12 | 인천시 동구 |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3 | 인천시 부평구 |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4 | 전주시 |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5 | 창원시 |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6 | 포천시 | 포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| 17 | 화성시 |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|

- 특히, 우리 구는 2022년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주택 등 5,273채,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, 2023년에도 문래동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홍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.
- 도시침수, 홍수 등의 재해는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

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
침수·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
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
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자구에도 문제점은
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 자연재해대책법

제3조(책무)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1)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7. 10. 24., 2020. 1. 29.>

1. (생략)
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
가. 삭제 <2017. 10. 24.>

나. 수방기준 제정·운영

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·운영

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·운영

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3 ~ 8. (생략)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~ ⑥ (생략) [전문개정 2011. 3. 7.]

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16조의3(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)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. 5.>

1. 침투시설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

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가. 침투통

나. 침투측구

다. 침투트렌치

라. 투수성 포장

마. 투수성 보도블록 등

2. 저류시설

가. 쇄석공극(碎石空隙)저류시설

나. 운동장저류

다. 공원저류

라. 주차장저류

마. 단지내저류

바. 건축물저류

사. 공사장 임시 저류지(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)

아. 유지(溜池),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,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,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·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4. 8. 6.]

3

물환경보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1. 17., 2018. 10. 16., 2021. 4. 13.>

1. (생략)

1의2. “점오염원”(點汚染源)이란 폐수배출시설, 하수발생시설, 축사 등으로서 관로·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.

2. “비점오염원”(非點汚染源)이란 도시, 도로, 농지, 산지, 공사장 등으로서

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.
 13. “비점오염저감시설”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제8조(비점오염저감시설)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14. 1. 29.>

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19. 12. 20.>

비점오염저감시설(제8조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

가. 자연형 시설

- 1) 저류시설 : 강우유출수를 저류(貯留)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·연못 등을 포함한다.
- 2) 인공습지 : 침전, 여과, 흡착, 미생물 분해,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.
- 3) 침투시설 :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·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(透水性)포장, 침투조, 침투저류지,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.
- 4) 식생형 시설 : 토양의 여과·흡착 및 식물의 흡착(吸着)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, 동·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.

나. 장치형 시설

- 1) 여과형 시설 :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·토양 등의 여과재(濾過材)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.
 - 2) 소용돌이형 시설 :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·그리스(grease) 등 부유성(浮游性)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, 침전가능한 토사, 협잡물(挾雜物)은 하부로 침전·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.
 - 3) 스크린형 시설 : 망의 여과·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(前)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4) 응집·침전 처리형 시설 : 응집제(應集劑)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,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·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5)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: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(colloid)성, 용존성(溶存性)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